

병무 행정 업무

□ 우리나라의 병역제도

국민 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고 지원제 병용

□ 병역의무 법적근거

○ 헌법 제39조 제1항

▶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무를 진다.

○ 병역법 제3조 <병역의무> :

▶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□ 병역의 종류 <병역법 제5조>

○ **현역** :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군인사법에 의하여 임용된 장교, 준사관, 부사관, 무관후보생

○ **보충역** :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수급 사정에 따라 현역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

○ **예비역** : 현역을 마친 사람,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

○ **제1국민역** : 현역, 보충역, 예비역,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

○ **제2국민역** : 징병신체검사 결과 군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

징 병 검 사

□ 징병검사 대상

- 해당년도 생년월일 기준 출생한 사람
-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

□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운영

-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 실시
- 선택방법 : 병무청 홈페이지(www.mma.go.kr) → 「민원마당」 → 「민원신청 조회」
→ 「징병검사민원신청」 → 「징병검사본인선택」
 - ▶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(지)청의 검사기간 중 일자를 선택
 - ▶ 다만, 학생(대학생, 고교생), 학원수강생,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(학교 소재지, 수강학원소재지, 직장소재지)관할 지방병무(지)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
 - ▶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 상호 선택가능
 - 대전·충남↔충북, 광주·전남↔전북, 부산·울산↔경남, 경기북부↔강원도
 - ※ 1일 징병검사 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선택이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- 선택기간 : 검사회망일 1일전까지
(다만,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종료 35일전까지)

□ 병역처분기준

○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

신체등위 학력	1 급	2 급	3 급	4 급	5 급	6 급	7 급
대 학	현역입영대상			보충역		제 2 국민역	
고 졸							
고 퇴							
중 졸							

○ 법정사유 보충역 및 제2국민역 처분대상

보충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·모 또는 형제·자매중 전몰군경·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·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○ 6월이상 1년6월미만 실형선고자 ○ 1년이상 수형자 중 집행유예자
제2국민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학 중퇴이하자, 고아, 귀화자 ○ 1년6월 이상 실형선고자 ○ 성 전환자(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된 사람)

재학생 입영연기

□ 관련 법규

-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, 제125조, 동법 시행규칙 제84조
- 입영연기 관리규정 제5조, 제6조

□ 개 요

-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(휴학)중인 사람에 대하여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

□ 대 상

-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
 - ※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, 학점은행제 과정, 전산원 재원중인 사람은 비대상
- 연수기관(사법연수원)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
-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분야 우수자

□ 학교별 제한연령

고 등 학 교	전문대학		대 학				대학원				
	2 년 제	3 년 제	4 년 제	5 년 제	6 년 제	의·치· 한의· 수의과대학	2년제	5·6 학기제	일반 대학원의 의학과,치의학과, 한의학과,수의학과	의·치의학 전문대학원	박사 과정
28 세	22 세	23 세	24 세	25 세	26 세	27세	26 세	27세	28세	28세	28세

※ 사법연수원 : 26세, 석·박사 통합과정 : 28세

□ 처리절차

○ 대학(교)/대학원

- ▶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장은 매년 편·입학하는 남학생의 명단을 3월31일 (후기 대학원은 9월30일)까지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무행정 시스템(<http://e4c.mma.go.kr>)을 통하여 송부(Excel 파일)

○ 교육청

- ▶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남학생에 대하여 고등학교별, 학년순으로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, 3월31일 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

○ 병무청

- ▶ 학적보유자 명부와 병역의무자 자료를 대조하여 입영연기 처분

□ 입영연기 제한

-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
-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람
-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
- 도망·신체손상 등 병역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

학적변동자 통보

□ 관련법규

-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7조, 동법 시행규칙 제85조
- 입영연기 관리규정 제11조

□ 개요

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중 학적이 변동된 사람에 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통보

□ 대상

-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
- 전학 및 편·입학 한 사람

□ 학적변동자별 세부 처리 지침

- 일반 휴학자, 유급자는 제한 연령까지 계속 입영연기 가능
 - ☞ 휴학자는 학적변동통보 비대상
-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로 입영연기 비대상자는 통보 제외
- 제적된 사람은 제적사유, 제적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
- 학적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통보
- 학적변동자 통보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통보
 - ☞ <각종서식 등> 지방병무청별 관할 지역 참조
-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적변동 통보
- 학적변동자통보는 병무행정시스템(e4c)에도 등록 가능
 - ※ 학적변동사항 통보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통보기일 엄수

졸업예정자 등 실태조사

□ 관련법규

입영연기 관리규정 제14조

□ 개 요

정확한 자원관리를 위해 병무청에서 재학생 입영연기자로 관리 중인 사람과 학교에서 재학생으로 관리중인 사람을 상호 대조·확인

□ 대 상

- 다음년도 졸업예정(2월, 8월)자
- 퇴학, 전·입학 및 제한연령 초과자 등

□ 조사 시기

- 전반기 : 5월 - 6월(학적보유자 인수, 연기처리 후)
- 하반기 : 10월 - 11월(졸업예정자 파악시)

□ 내 용

- 졸업가능여부 및 졸업예정시기, 최종전공학과
- 학적변동 여부, 의무부과 대상 여부

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안내

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금년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입영일자를 선택하여 입영할 수 있습니다.

○ 신청방법 및 절차

신청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급학교 재학 및 국외체재 사유로 현역병 입영이 연기중에 있는 사람 ○ 현역병 입영기일이 연기중이거나, 연기가 만료된 사람으로서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(신청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입영일자만 선택 가능)
입영시기	연 중
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병무청홈페이지(www.mma.go.kr) ⇒ 현역병입영·대체복무 ⇒ 입영일자 본인선택 ☞ 홈페이지 접속하면 선택 가능한 입영일자가 나타남 ※ 국외체재사유 현역병 입영연기자 병무청홈페이지(www.mma.go.kr) ⇒ 민원마당 ⇒ 민원신청·조회 ⇒ 국외여행·국외체재민원 ⇒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(취소)신청 ⇒ 민원신청종류 선택(현역 입영일자 본인선택)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영부대는 입영일자 선택과 동시에 전산으로 자동분류되어 결과가 나타남 ○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취소, 기일연기가 제한되므로 선택에 신중 ○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선택시 공인인증서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인인증서는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다운로드 후 신청 (국외체재사유 현역병 입영연기자는 공인인증 없이 신청 가능) ※ 본인 희망시 공인인증서 CD 저장 무료 배포 (징병검사장 1층)
문 의	병무민원상담소 : 1588-9090

병무행정시스템(e4c) 사용자 Manual

□ 개요

학적보유자 명부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병무행정시스템에 직접 입력 또는 로드 할 수 있어 업무처리기간 단축 및 보안 강화

□ 병무행정정보체계사용 업무처리절차

○ 병무행정정보체계 사용신청서 작성 및 신청(각급학교)

각급학교에서는 『병무행정정보체계 사용(변경, 취소)신청서』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에 신청

○ 공인인증서 발급(대학병무담당)

=>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 모두 사용가능

□ 유관기관 병무행정시스템 사용

◆ 시스템 연결 주소 : <http://e4c.mma.go.kr/>

1. e4c 로그인한다.

